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39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김종민·박수현·박희승

서왕진 · 안도걸 · 어기구

이수진 • 이재관 • 전종덕

천하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,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,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수탁·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,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어려운 실정임.

반면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.

이에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유용행위"를 "유용행위(수탁·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준수사항) ① (생 략)	제25조(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	2		
업의 기술자료(비밀로 관리되			
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)에 관			
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유용행</u>	유용행위		
<u>위</u>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(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<u>전</u>		
	행한 행위를 포함한다)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